##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52

발의연월일: 2021. 3. 9.

발 의 자:김남국·오기형·임호선

이규민 · 김승원 · 오영환

장경태 · 최강욱 · 고영인

고민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배제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당의 광고물등을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는바,이에 대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제8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	제8조(적용 배제)
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	l
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u>.</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
	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
	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